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18.3.14.~3.16.)

조 례 안 상 정

(조례 13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8-17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8-18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7
2018-19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8-20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8-21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18-22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18-23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2018-24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2018-25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3
2018-26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2018-27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73
2018-28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2018-29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인력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별표 4)
 -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하여 월 500,000원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4조, 별표 9

나. 예산조치: '18년 예산 4,500천원 확보

(1명*500천원*9개월=4,500천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개혁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12. 27.~'18. 1.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1): 의령군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별표 9 제2호가목·다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의직렬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제3조 중 “영 별표 9 제7호라목”을 “영 별표 9 제8호라목”으로,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표 5로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u>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u><신 설></u></p> <p>제3조(장려수당) 영 <u>별표 9 제7호라목</u>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u>별표 4</u>와 같다.</p>	<p>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u>별표 9 제2호가목·다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2. <u>일반임기제공무원</u>----- ----- 3. ----- ----- 4. <u>수의직렬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u> <p>제3조(장려수당) 영 <u>별표 9 제8호라목</u>----- ----- -----<u>별표 5</u>-----</p>

[별표 4] <신 설>

수의직렬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수의직렬공무원	월 500,000원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

[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월 250,000원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2조(의료업무수당)제4호 및 별표 4
-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월 500,000원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수의직렬공무원 1명*500천원*12개월= 연 6백만원

4. 작 성 자

행 정 과 장 이화기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안 번호	2018-1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8.1.1.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 위임조례 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을 정함(안 제2조~제5조)

다. 고충민원의 대상 및 제외를 정함(안 제6조)

○ 지방세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고충사항이 대상

라. 세무조사의 연기, 세무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세무조사 연기신청의 경우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의 경우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마. 권리보호요청 대상, 처리의 기본원칙, 처리기간, 고충민원과의 구분을 정함(안 제10조~제13조)

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를 정함(안 제14조)

사. 제도개선 의견 및 과제관리를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8. 1. 31.~2.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제·개정현황: 제정 5개 시·군, 전부개정 9개 시·군

(7)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사례 반영함.

거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세무담당부서 외에 군민의 권리 구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할 때에는 세무담당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법 제77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26조에 따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3.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등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5.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6조(고충민원의 대상 및 제외) 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 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 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 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세무조사 연기신청) ① 납세자는 법 제83조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연기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연기 승인을 하는 경우 납세자가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9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담당부서장이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 (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담당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 접수사실 통보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1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할 때 납세자 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담당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과의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13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14조(납세자권리현장 제정 및 준수)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현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세무담당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담당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이를 관리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1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군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기간 연장(안 제2조·제5조·제7조·제9조)

- (현행)2017년 12월 31일까지 ⇒ (변경)2018년 12월 31일까지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

나. 위임법령의 범위에서 감면기간 조정함(안 제5조·제7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5년 ⇒ 3년으로 변경함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다. 법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축소(안 제8조)

- 100분의 100 ⇒ 100분의 50

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추가(안 제10조)

마.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함(안 제11조~14조, 제16조~제18조)

- 직접 사용의 의미, 감면 제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중복감면의 배제, 감면신청 등, 감면자료의 제출, 감면기한의 특례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제180조, 제183조·제18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1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55조·제75조의2·제92조의2,

제177조~제180조, 제183조·제18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12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8. 2. 14.~3.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현황

○ 개정완료(9): 김해, 밀양, 사천, 의령, 진주, 통영, 함안, 고성,
창원

(7)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본문, 제7조, 제9조 중 “2017년”을 “2018년”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여부에도 불구하고”를 “여부와 관계없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문판매점을”을 “전문판매점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8조 조 제목 “기업도시”를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75조의2제1항”을 “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으로 “감면율”을 “경감률”로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 중 “추진되는”을 “추진하는”으로 한다.

제10조 조 제목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6조부터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균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2. (생략)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 1.~2. (생략)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2018년

- 1.~2. (현행과 같음)

3. -----전문판매점의 -----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단서 삭제>

- 1.~2.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2018년 -----

----- 3년간 -----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 ----- 경감률 -- 100분의 50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 추진하는 -----

----- 2018년 -----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①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균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군·구의 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
 할 시·군·구의 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군·구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균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2. -----

<삭 제>

<삭 제>

<삭 제>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2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지방세법」 개정(시행 '18.1.1.)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 확대함(안 제14조)
 - 부과기준세액: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8. 2. 12.~3.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개정현황(입법예고 9)

○ 김해, 밀양, 사천, 양산, 진주, 창원, 산청, 함안, 함양

(7)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사례 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세조례”를 “거창군 군세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거창군세조례</u>	<u>거창군 군세 조례</u>
<p>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u>10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제14조(납기) ----- ----- -----<u>20만원</u>----- ----- -----</p>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2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조례로 재기재하여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 취지에 맞게 목적규정 정비함(안 제2조)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 조례의 취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함.

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함(안 제2조)

- 근거법령을 인용하고,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자구 수정함.

다. 법령 재기재사항인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비함(안 제3조)

- 법령에 없는 부위원장 선출방법 규정: 위원 중에서 호선

라. 위원회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 바로잡음(안 제5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미리 지명한 아동위원이 대행
⇒ 위원이 대행

마.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함(안 제5조의2)

바. 수당규정 삭제함(안 제10조)

-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근거: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8. 1. 24.~2.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정비현황(제3조 자치법규 정비과제 중심으로)

○ 미정비(3):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7)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사례 반영함.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
2.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부위원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제2항 중 “아동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8조 중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두고, 간사는
군수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u>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p>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u>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 2.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p>제3조(부위원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u>풍부한 사람</u></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u>아동위원</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u>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u></p> <p>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u>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u>」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위원</u>-----</p> <p>제5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u>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u> 2. <u>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u></p> <p>제8조(간사) ----- -----<u>두고, 간사는</u> <u>군수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u></p> <p><u><삭 제></u></p>
---	---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2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상위법령 위배 및 재기재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내 매점 면적제한 규정 삭제함(안 제3조 단서)

- 매점 면적제한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로 삭제

나. 계약기간 3년 규정 삭제함(안 제6조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되어있어 법령위배

다. 계약자의 의무 규정 삭제함(안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행관리 규정 삭제

라. 계약의 해지 규정 삭제함(안 제8조)

- 법령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나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 외에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로 삭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 「지방자치법」 제22조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1. 24.~2.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 완료(3): 사천, 진주, 의령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법령”을 “조례”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u>2.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를 게을리한 경우</u><u>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u><u>4. 공익상 필요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폐지하는 경우</u><u>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u> | |
|---|--|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2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의 층이라는 의미인 “계층”이라는 용어를 순화하여 계층간 위화감 등을 해소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순화함(안 제명, 제1조~제3조)

- 저소득계층 ⇒ 저소득주민

나.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 조례에서 한 번만 나오는 용어는 정의에서 삭제하고 제3조 지원 대상에서 직접 규정함
- 보험료, 저소득주민 용어 정의 정비

다. 보험료 지원대상 정비함(안 제3조)

- 정비: 한부모세대 ⇒ 한부모가족
- 실효성 없어 삭제: 소년소녀가장세대

라. 법령위배 소지가 있는 지원 예산확보 규정 삭제함(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 근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1. 25.~2.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도내 개정현황: 14개 시·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저소득계층에 대하여”를 “저소득주민에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험료가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u>저소득계층</u>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u>지원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u>저소득 계층에 대하여</u>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저소득계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부과액 합산금액이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p> <p>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p> <p>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p> <p>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을 말한다.</p> <p>5. “소년소녀가장세대”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세대와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조손세대를 말한다.</p>	<p>거창군 <u>저소득주민</u>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u>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u>저소득 주민에게</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p> <p>2.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험료가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p>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 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삭 제>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2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맞추고, 조례로 위임된 위임 범위를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더 명확히 하는 등 이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위임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아이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
- 군복무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안 제3조)
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문장 등을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위임행정규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5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1. 11.~1.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6)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중 “입원”을 “가구원 중 입원”으로 “등으로”를 “등의 사유로”로 “미비”를 “미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이양육”을 “아이(「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양육”으로 “미비”를 “미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를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동”을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로 “전전하며”를 “ 옮겨 다니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전 제6호) 중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를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중전 제8호) 중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중전 제12호) 중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이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1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2호”로 “경우”를 “경우로서 거창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거창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4항----- -----</p>
<p>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u>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사유</u>”란 <u>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u> 2. <u>임신, 출산, <u>아이양육</u>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u> 3. <u>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u> 4. <u>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u> 5. <u>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u>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u>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u>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u>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u>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u> 	<p>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u>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u>”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가구원 중 입원-----등의 사유로</u> -----<u>미미</u>----- 2. -----<u>아이(「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u> <u>양육-----미미-----</u> 3. <u>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u> ----- 4. <u>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u> -----<u> 옮겨 다니며</u>-----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 <u>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u>----- ----- 6. ----- ----- ----- 7. ----- -----<u>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u>

<p><u>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u>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p> <p>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 하여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이거나 공급이 제한 조치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p> <p>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 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p> <p>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p> <p>12. <u>신용회복위원회</u>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p> <p>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u><신 설></u></p> <p>14. 그 밖에 제1호부터 <u>제13호</u>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u><신 설></u></p>	<p><u>지 아니한 날부터</u>----- -----</p> <p>8. ----- ----- ----- -----</p> <p>9. ----- ----- ----- ----- -----</p> <p>10. ----- ----- -----</p> <p>11. 「<u>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u>」 제56조에 따른 <u>신용회복위원회</u>의 -----</p> <p>12. -----</p> <p>13. 「<u>범죄피해자 보호법</u>」에 따른 범 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 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 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 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14. -----<u>제12호</u>----- -----<u>경우로서</u> 거창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p> <p><u>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 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u> 군에 두는 <u>긴급지원심의위원회</u> 기능은 「<u>국민기초 생활보장법</u>」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u>설치한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 한다.</u></p>
---	--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2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 취지에 맞게 규정하고,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재기재·위배, 유명무실한 조항 삭제(구 2조~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7조, 제19조)

-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사업,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경력 및 실적 인정 등, 사기진작, 실비지급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보험가입 규정을 법령 취지에 맞게 수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18년도 예산 600만원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8. 1. 17.~2. 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현황(센터 등록 및 보험지원 정비관련)

○ 개정완료(2): 통영, 함안

○ 입법예고(1): 진주

(7)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 군수가 선임
 2. 그 밖의 경우: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선임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
- ② 군수는 센터장을 직접 선임할 경우 면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접은 5명 이내의 심사위원이 하되, 심사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원봉사 요청 및 배치) ①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와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의 요청을 받은 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인적·물적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의 전공·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단체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라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6조(자원봉사단체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원 예산은 6백만원으로 연 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정상준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2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용어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조례 전반, 안 제29조)

- 성평등 ⇒ 양성평등
- 여성주간 ⇒ 양성평등주간

나. 법령위배 및 개별조례 제정·시행 중인 사항 등 삭제(안 제2조, 제3조, 제7조~제13조, 제25조, 제31조, 제37조~제39조)

- 정의규정 삭제: 성평등, 성차별
- 군수의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수립의무 삭제: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시행계획 수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무로 규정
- 성평등정책위원회 규정 삭제: 구성·운영 실적 전무, 실효성 없음
-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규정 삭제: 「거창군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15.3.25. 제정 시행 중) 규정사항
- 성평등기금 삭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7.9.27. 제정 시행 중)
- 그 밖에 실효성 없는 규정 삭제
 -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양성평등계정에서 지원
 - 사무의 위탁, 수당 규정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2. 7.~12. 2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를 “거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거창군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 제목, 제16조 제목·제1항, 제17조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7조 제목·본문, 제28조, 제30조, 제33조, 제4장 제목, 제35조, 제36조 제목·제1항·제3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를 “여성과 남성 공무원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해야 한다.”를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9조 제목 “(여성주간 행사)”를 “(양성평등주간 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을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 중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를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으로 한다.

제34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로 한다.

제5장(제37조)을 삭제한다.

제6장(제38조·제39조)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u>성평등</u> 기본 조례</p>	<p>거창군 <u>양성평등</u> 기본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거창군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p> <p>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p>	<p><삭 제></p>
<p>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삭 제></p>
<p>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p>	<p>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p>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7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정책 추진목표
 -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6. 그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평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제8조(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1.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과 여성단체, 여성인력 개발 관련 전문가, 성평등 정책과 관련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1조(해촉)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성평등 촉진 정책

제14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군정참여 확대) ① (생략)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직 등의 성평등 촉진) ① 군수는 성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

<삭 제>

제3장 양성평등 촉진 정책

제14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군정참여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
-----여성과 남성공무원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직 등의 양성평등 촉진) ① ---
양성평등-----

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시행하고,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해야 한다.

제17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생략)

② 군수는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1조(성평등의식 제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학교·사회교육, 기업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23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 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5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

-----양성평등-----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양성평등의식 제고) -----

-----양성평등-----

제2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양성평등-----

②~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양성평등-----

③~④ (현행과 같음)

<삭제>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7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군수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주요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29조(여성주간 행사) ① 군수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군수는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거창군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국제협력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

제27조(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
양성평등-----

제2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
---양성평등-----

제29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②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제30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양성평등-----

<삭 제>

제32조(국제협력 지원) -----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하여야 한다.

제33조(군민참여) ① 군수는 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4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4장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

제35조(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군수는 군 전반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성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수립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군수는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장 성평등기금

제37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규정에 같음한다.

제33조(군민참여) ① -----양성평등-----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유공자 표창) ---양성평등---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

제4장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

제35조(성인지 예산 분석 및 평가) --

양성평등-----

제36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
-----양성평등-----

② (현행과 같음)

③ -----양성평등-----

<삭 제>

<삭 제>

제6장 보칙

<삭 제>

제3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39조(수당 등)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8-2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의 개정(‘18. 1. 18. 시행)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

나. 재난피해자의 지원 결정을 규정함(안 제3조)

-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
- 경상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생활안정지원: 구호비·생계비·주거비 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 간접지원: 농어업인·임업인·소상공인 자금 융자 및 이자 감면 등
- 피해수습지원: 공공시설 복구, 피해자 수색 및 구조 등

라.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둠(안 제5조)

마.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위한 신고, 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재난피해자는 지원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신고
- 직접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지원 가능

바.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나. 예산조치: 상황발생 시 예비비 사용계획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18. 1. 4.~1. 24.

○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조례 제정 현황

○ 제정완료(2): 창녕, 통영

○ 입법예고(11): 거제, 양산, 진주, 밀양, 창원, 김해, 합천, 함안,
고성, 남해, 의령

(7) 표준안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사례 반영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금 능력이 없는 이유 등으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군수가 제6조제5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제20조·제21조), 별표 7,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그 밖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확정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다른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2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에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거창군 농업인 회관에 대한 개수·보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농업인회관 개수·보수비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항 제10호, 별표)
 - 지원율: 100퍼센트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18년 예산 3천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예산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1. 22.~2. 12.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불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중 “지원”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재육성”을 “인재육성 사업”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지원”을 “육성사업”으로, 같은 항 제8호 중 “지원”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의 개수·보수 사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조사업의 지원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u>지원</u></p> <p>2.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u>지원</u></p> <p>3.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u>지원</u></p> <p>4. 농업 6차산업 활성화 <u>지원</u></p> <p>5.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u>인재 육성</u></p> <p>6.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u>지원</u></p> <p>7.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u>지원</u></p> <p>8.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u>지원</u></p> <p>9. 제3조의2에 따른 지원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p>	<p>제4조(보조사업의 지원범위) ① --- ----- -----</p> <p>1. ----- -----<u>사업</u></p> <p>2. ----- -----<u>사업</u></p> <p>3. ----- -----<u>사업</u></p> <p>4. -----<u>사업</u></p> <p>5. -----<u>인재 육성 사업</u></p> <p>6. -----<u>사업</u></p> <p>7. -----<u>육성 사업</u></p> <p>8. -----<u>지원 사업</u></p> <p>9.----- -----</p> <p>10. <u>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의 개수·보수 사업</u></p> <p>② ----- -----</p>

[별표]

농어업보조금 지원 세부사업(제4조 관련)

지원분야	세부사업 내용	지원율 (퍼센트)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사업	가축 개량·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사업	50~100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개발·판매 등의 사업	50~100
	축산물 위생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50~70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사업	50~70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사업	50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 보호, 생산시설·생산성 향상 및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과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업	50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	친환경·고품질·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농자재 지원 사업	50~100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사업	70~100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사업	70~100
원 예 농 산 물 F T A 경 쟁 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업	원예·특작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사업	50
	유망 신품종 보급사업	70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사업	50
	지역 전략작목 육성사업	50
	지역적용 및 특화가능한 작목 육성사업	50
	농업경영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	50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 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50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사업	지역대표 먹거리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각종 광고, 행사, 가격할인, 장비·포장재 지원 사업	50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메뉴, 브랜드, 컨설팅, 마케팅, 위생용품지원, 행사	50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 사업(농촌민박, 관광 농원, 휴양단지개발 등)	50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운영, 보험가입, 교육, 노후 체험시설, 마을사무장 지원 사업	100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지원 사업	100

	시설, 장비, 가공비, 포장재 등 농산물 가공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50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어업인 육성 사업	70
	수련회, 연찬회, 워크숍, 교육, 중앙 및 경남도 대회 참가 등 농업관련 단체의 활성화 사업	70~100
	농업전문인력양성(농어업인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별 연구회 육성)사업	100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	100
농산물 수출 진흥 및 해외 시장 개척 사업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행사, 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개척 사업	50
	수출 촉진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50~100
	농산물 수출 물류비, 포장재 등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	100
	수출농가, 업체 등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사업	50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	농산물 공동규격출하에 따른 시설 및 운영 지원 사업	50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 시설, 장비 등 지원 사업	50~70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품질관리 및 포장재, 마케팅 지원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 사업	50~100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생산 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사업	100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	100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0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의 개수·보수 사업	거창군 농업인회관 개수·보수 사업	100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조(목적)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어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거창군 농업인회관 유지보수비 3천만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2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귀농정책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귀농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귀농인 지원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 삭제하여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귀농 및 귀농세대 지원기준 완화함(안 제3조제2호·제3호)

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함.(안 제4조)

라. 위원회의 구성을 현행화 함.(안 제6조)

마. 위원회의 회의소집을 보완함.(안 제9조제2항)

바. 위원회 수당 규정 삭제함(안 제12조)

-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근거: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사. 1인 귀농세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

- 1인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250만원 이내

아.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등 삭제함(안 제16조~제18조)

- 지방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규정, 사후관리, 준용
- 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 제19조

자. 귀농인·귀농단체 지원사업 중 인구증가 지원사업과 중복 규정사항 정비함(안 부칙)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중 귀농관련 규정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5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나. 예산 조치: '18년도 예산 4억 확보(영농정착금)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8. 1. 10.~1.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업 없음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역”을 “거창군”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를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귀농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인 귀농세대일 경우 250만원 이내 지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를 제1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제2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20조제2항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제3호·제4호·제5호로 한다.

제3조(적용례) 제15조제3항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전입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통한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귀농인”이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말한다.</p> <p>3. “귀농세대”란 세대주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귀농인으로서 2명 이상의 세대구성원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원사업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세대를 말한다.</p> <p>4. (생략)</p> <p>제4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제1조(목적) -----<u>거창군</u>-----</p> <p>-----</p> <p>-----</p> <p>-----</p> <p>-----</p> <p>-----</p> <p>-----</p> <p>-----</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text-align: center;">2년-----</p> <p>-----</p> <p>-----</p> <p>-----</p> <p>-----</p> <p>3. -----</p> <p style="text-align: center;">-----<u>20세 이상 60세 이하</u>-----</p> <p>-----</p> <p>-----</p> <p>-----</p> <p>-----</p> <p>4.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3. 농업인단체의 대표 4. 성공적인 정착을 한 귀농인 5. 그 밖에 귀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p>③ 위원은 귀농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p>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9조(회의) ① -----</p> <p>-----</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③ -----</p> <p>-----</p> <p>-----</p>
<p>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15조(귀농인·귀농인단체 지원사업)</p> <p>①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농인의 농업전문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 	<p>제15조(귀농인·귀농인단체 지원사업)</p> <p>① -----</p> <p>-----</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p>-----</p>

현 행	개 정 안
<p>계의 구축 2.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이내의 영농정착금 지원.<단서 신설></p> <p>3.~9. (생략) ② (생략)</p> <p><u>제16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u>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결정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p> <p>1.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사전협의 없이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u>제17조(사후관리)</u>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p>	<p>----- 2. ----- -----<u>다만, 1인 귀농세대일 경우 250만원 이내 지원</u> 3.~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u>제16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u>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운영 상황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u></p> <p><u>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사업의 신청, 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u></p> <p><u>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삭 제></u></p> <p><u>제16조(시행규칙) -----</u> -----</p>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1인 귀농세대 지원(제15조제1항제2호)
 - 1인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250만원 이내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출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400	400	400	400	400	2,000
	계	400	400	400	400	400	2,000

※ 산출기초: 귀농세대 80명(추정) × 500만원 = 400백만원 (* 1인 귀농세대 포함)

3. 관련 의견

-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귀농 유치 활성화를 도모
-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하고자 함.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영 학